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
------	-----

제출년월일 : 2000. 4.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증평출장소에서 설치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 현실 불부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조례제명 변경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
- 분뇨처리시설관련 용어정의
 - 분뇨,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
-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되는 분뇨처리장 시설의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의 규정 개정 및 상위법 적용조항 추가(안 제1조, 제4조, 제15조제1항)

- 하수종말처리장 명칭 및 위치 조정
 - 증평하수종말처리장 → 증평하수처리장
 - 증평읍 연탄리 228번지 일원(지번합병) → 연탄리307번지
- 증평분뇨처리장 명칭 및 위치 신설
 - 증평분뇨처리장
 - 증평읍 연탄리 268-2번지
- 현행 불부합한 조문정비 및 조정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결과 : 이견없음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서 설치 운영하는 하수도법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 처리장의 위탁·운영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제52조제3항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6호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분뇨처리장" 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4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 및 제5항, 제11조제2호 및 제4호와 제6호 및 제10호,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6조중 "하수처리장"을 "하수·분뇨처리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출장소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나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위탁시에는" 다음에 "위탁기간."을 삽입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출장소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반입되는 분뇨의 확인 및 이에 관련된 사항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용료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으로 충당하되 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하수·분뇨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증평하수처리장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307번지	
증평분뇨처리장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68-2번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명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명.....하수·분뇨처리장.....</p> <p>.....</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제52조제3항 및같은법률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를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p> <p>3.(생략)</p> <p>4.(생략)</p> <p>5.(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p> <p>.....</p> <p>1.(현행과 같음)</p> <p>2.(삭제)</p> <p>3.(현행과 같음)</p> <p>4.(현행과 같음)</p> <p>5.(현행과 같음)</p> <p>6."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7."분뇨처리장"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p> <p>8."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라 함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을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p>

현행	개정
<p>제3조(적용범위) <u>하수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3조(적용범위)<u>하수·분뇨처리장</u>.....</p>
<p>제4조(위탁에 관한 사항등)①<u>출장소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제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의 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 내용, 위탁 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 운영 예산액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u>하수처리장운영관리에 관하여 출장소장의 지위·감독을 받으며, 출장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u></p> <p>④출장소장은 <u>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내릴 수 있다.</u></p>	<p>제4조(위탁에 관한 사항등)①<u>출장소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나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 기간,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운영 예산액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p> <p>③.....<u>하수·분뇨처리장</u>.....</p> <p>④.....<u>하수·분뇨처리장</u>.....</p>
<p>제5조(명칭 및 위치) <u>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u></p>	<p>제5조(명칭 및 위치).....<u>하수·분뇨처리장의</u>.....</p>
<p>제8조(수탁자의 선정 심사위원회)①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u>하수처리장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출장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과 당해전문가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u></p>	<p>제8조(수탁자의 선정 심사위원회)①.....<u>하수·분뇨처리장</u>.....</p> <p>②제1항의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u>출장소장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u></p>

현행	개정
<p>제9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①수탁자는 <u>하수처리장</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p> <p>②<u>하수처리장</u>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p> <p>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출장소장은 <u>하수처리장</u>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9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①..... <u>하수·분뇨처리장</u>.....</p> <p>.....</p> <p>②<u>하수·분뇨처리장</u>.....</p> <p>.....</p> <p>③.....<u>하수·분뇨처리장</u>.....</p> <p>.....</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p> <p>①~②(생략)</p> <p>③수탁자는 출장소장의 사전 승인없이 <u>하수처리장</u>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④(생략)</p> <p>⑤수탁자는 <u>하수처리장</u>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u>하수·분뇨처리장</u>.....</p> <p>.....</p> <p>④(현행과 같음)</p> <p>⑤.....<u>하수·분뇨처리장</u>.....</p> <p>.....</p>
<p>제11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생략)</p> <p>2.<u>하수처리장</u> 운영 및 유지보수</p> <p>3.(생략)</p> <p>4.<u>하수처리장</u>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p> <p>5.(생략)</p> <p>6.<u>하수처리장</u>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처리</p> <p>7.(생략)</p> <p>8.(생략)</p> <p>9.(생략)</p> <p>(신설)</p> <p>10.기타 <u>하수처리장</u>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p>	<p>제11조(수탁자의 업무).....</p> <p>.....</p> <p>1.(현행과 같음)</p> <p>2.<u>하수·분뇨처리장</u></p> <p>3.(현행과 같음)</p> <p>4.<u>하수·분뇨처리장</u></p> <p>5.(현행과 같음)</p> <p>6.<u>하수·분뇨처리장</u></p> <p>7.(현행과 같음)</p> <p>8.(현행과 같음)</p> <p>9.(현행과 같음)</p> <p>10.<u>반입되는 분뇨의 확인 및 이에 관련된 사항</u></p> <p>11.....<u>하수·분뇨처리장</u>.....</p>

현행	개정																		
<p>제12조(위·수탁 기간)①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1회의 협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p> <p>②(생략)</p>	<p>제12조(위·수탁 기간)①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생략)</p> <p>1.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3~5(생략)</p> <p>②(생략)</p>	<p>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현행과 같음)</p> <p>1.하수·분뇨처리장</p> <p>.....</p> <p>2.하수·분뇨처리장</p> <p>.....</p> <p>3~5(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탁비용 등)①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제21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⑤(생략)</p>	<p>제15조(위탁비용 등)①하수·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용료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으로 충당하되 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⑤(현행과 같음)</p>																		
<p>제16조(주민생활보전)①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6조(주민생활보전)①.....하수·분뇨처리장.....</p> <p>.....</p> <p>②.....하수·분뇨처리장.....</p> <p>.....</p>																		
<p>【 별 표 】 하수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명 칭</th> <th style="width: 50%;">위 치</th> <th style="width: 2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중평하수종말처리장</td> <td>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28번지 일원</td> <td></td> </tr> <tr> <td>(신설)</td> <td>(신설)</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비고	중평하수종말처리장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28번지 일원		(신설)	(신설)		<p>【 별표 】 하수·분뇨처리장의 명칭 및 위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명 칭</th> <th style="width: 50%;">위 치</th> <th style="width: 2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중평하수처리장</td> <td>..... 307번지</td> <td></td> </tr> <tr> <td>중평분뇨처리장</td> <td>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68-2번지</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비고	중평하수처리장 307번지		중평분뇨처리장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68-2번지	
명 칭	위 치	비고																	
중평하수종말처리장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28번지 일원																		
(신설)	(신설)																		
명 칭	위 치	비고																	
중평하수처리장 307번지																		
중평분뇨처리장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68-2번지																		

관 련 법 규 발 취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분뇨처리의 의무)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를 주 1회이상 점검할 것
2. 투입된 분뇨의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주 1회이상 점검하여 각 처리공정별 처리상황을 파악할 것

②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방법·유입분뇨의 양, 방류수의 수질 및 기후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5년마다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수질분야 기술사

④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최종처리하는 시설의 기술진단시 함께 기술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본금 또는 재산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가. 자본금 또는 재산

- (1) 법인인 경우 : 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 (2) 개인인 경우 : 재산평가액 5억원 이상

나. 기술능력

- (1)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 이상
- (2) 화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 1인 이상
- (3) 기계기사(일반·정밀·건설·공정설계분야) 1인 이상
- (4) 전기기사 1인 이상

3.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방지시설업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7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과 그 구청장간의 관련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가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하수도법시행령

제7조(관리의 특례) ③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